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492

제출연월일: 2018. 11. 8.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우수 중소기업 및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안 제7조, 안 제8조)

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업무위탁(안 제19조)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나.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제2항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2019년 당초예산 반영, 비용추계서 반영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2018. 9. 17. ~ 2018. 10. 10.(의견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타목 및 「중소기업기 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지역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2.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의 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육성 및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안정,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 제4조(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 2.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구매단 초청 및 상담
- 3. 그 밖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
- 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대학, 중소기업,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 약을 체결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인터넷, 구정소식지 등 구정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의 제품 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 참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기업관련 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 간 정보교류와 상호이익 증대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 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 및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중소기업 포상)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 24 (제211회-복지건설위제4차부록)
- 제8조(모범근로자 사기 진작)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모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1. 포상
 - 2. 모범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
 - 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 3. 그 밖에 구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융자를 실시하기 전에 융자총액, 융자 대상 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 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대상) 자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마친 기업
 -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 제11조(융자신청) 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융자추천)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기업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 제13조(협조융자 지원 및 조건)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고, 그 밖에 융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이자 지원)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도록 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15조(자금의 상환) ① 자금의 융자상환 및 상환지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이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제16조(변경신고)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해당 기업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과 제19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26 (제211회-복지건설위제4차부록)
- 제17조(사후관리) ① 구청장과 제19조 따른 수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8조(보고 등) ① 제19조에 따른 수탁기관은 신규대출취급내역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원활한 자금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제19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자금 융자, 판로지원,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 거 법 규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중 략~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중소기업기본법」

-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 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울산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수신 경제산업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제일자리과-64648(2018.9.13.)호와 관련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여 성 가 족 과 장

주무관 여성정책계장 여성가족과장 ^{전결 2018.} 9. 27.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1048 (2018. 9. 27.) 접수 경제산업과-1881 (2018. 9. 27.)

우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복산동, 중구청) / http://www.junggu.ulsan.kr

전화번호 052-290-4903 팩스번호 052-290-4909 / ssalnoon@korea.kr / 대국민 공개

울산큰애기와 함께하는 울산중구 여행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울산중구039						
정 책 명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소관부서	부서명	경제산업과					
	담당자명	하귀은	전화번호	052-290-331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9월 1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경제일자리과)	본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제정의 주요내용은 가.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안 제3조 ~ 안 제6조), 다. 우수 중소기업 및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안 제7조, 안 제8조), 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안 제9조 ~ 안 제18조), 마. 업무위탁(안 제19조) 등에 대한 내용임.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 다.

2018년 09월 22일

울산광역시중구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류지숙/052-290-4903)

경제산업과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제9조제2항제3호타목 중소기업 육성)를 처리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2. 비용추계의 전제
 - ㅇ 중소기업 기술컨설팅, 서비스모델 발굴, 시제품제작 등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지출	중소기업 지원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소 계(a)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수입	시 비	0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0
	소 계(b)	0	0	0	0	0	0
	총비용(a-b)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천원)

구분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합계
시비	-	-	-	-	-	-
구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합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1. 부대의견: 없음

2. 협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3. 작 성 자: 경제일자리과 지방공업주사보 하귀은(290-3313)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천원)

구분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시비	일반회계						
	구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합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2. 재원조달방안: 구비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5. 작 성 자: 경제일자리과 지방공업주사보 하귀은 (290-3313)